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3. 제안이유

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삭제(안 제2조)

나.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안 제5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2016년 12월 31일이 존속기한인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2016. 5. 31. 제1차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해 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